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1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오세희 · 김남희 · 이주희
박지혜 · 박희승 · 정진욱
이훈기 · 장종태 · 위성곤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

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14조의2에”를 “제14조의3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2에”를 “제14조의3에”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 요청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 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 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u>제14조의2에</u> 따른 가맹점사업 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 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 ----- ----- ----- ----- ----- ----- ----- ----- ----- -- <u>제14조의3에</u> ----- ----- ----- -----.
②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 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u>제14조의2에</u> 따른 가맹점사 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u>제14조의3에</u>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협의 요청 등) ① 가맹점 사업자는 상권이 급격히 악화</u>

	<u>되는 등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u>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생략)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제33조(시정조치) ① ----- ----- ----- ----- ----- ----- -----제14조의3제5항-----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